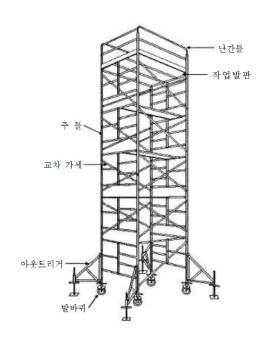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라 한다)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1> 이동식비계 예(참조그림)

4. 재 료

- (1) 이동식 비계의 주틀(이하 "주틀"이라 한다), 발바퀴,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이하 "난간틀"이라 한다), 교차가새, 작업대(이하 "작업발판"이라 한다),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이하 "아웃트리거"라 한다)의 각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주틀 및 발바퀴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